

# 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 보고서

### 1. 심사과정

- 제출자 : 오세광 의원 외 4명
- 제출일자 : 2020. 11. 13.
- 회부일자 : 2020. 11. 25.
- 상정 및 의결 :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20.11.25.)

#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 : 오세광 의원)

#### 가. 근거법령

- 「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3조, 제6조
- 「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」 제4조 ~ 제13조

#### 나. 제안이유

-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,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제반환경을 만듦과 동시에 탄력적 근무제도, 부양가족 지원제도, 근로자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 직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제정

#### 다. 주요내용

- 목적에 관한 사항(안 제1조)
-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구민 및 사업주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-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계획수립 과 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7조~제8조)
- 표창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성완)

○ 본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 
삶의 질 향상과 양성평등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 
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여 건강한  
가정환경 조성과 동시에 탄력적 근무제도, 부양가족 및 근로자 지원제도 등  
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판단되며,  
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#### 조례안 수정가결 내역

대구광역시 서구 가족친화 사회환경 주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 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3항 사. 가족친화 사회공헌도제도 :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 
다문화가족, 새터민 가족, 독거노인,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 
에서 ‘새터민 가족’ 삭제.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

### 조문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제2조의3(정의)  사.“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: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다문화가족, 새터민 가족, 독거노인,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	제2조의3(정의)  사.“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: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, 다문화가족, 독거노인,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